

기안용지

분류기호	신규 0041	(전화번호) 6-6367)	진 결 유 정 조 합 진 결 사 합	
처리기간				
시행일자				76. 11. 22
보존년한				11. 22
보조기관	제2부4과 도시계획과 건축제도과	법무감광과 (전화 8444) 법제제과 (")	회계과 심사과	
기안제임자	유치	10. 25.	조	
결수함	유신조 각안참조	반신	통계 1976. 11. 22 도시계획과	
제목	공사감리자를 두는 애상건축물규모 공고			
	"제 1 안" 한양대학교			
	배부결재			
	1. 주택건축허가제도 개선사항에 따른 건축법			
	시행령제 7조 제 1항 단서의 취정에 의하여 총리자를			
	정하여야 할 주택 (만족주택, 연립주택, 병용주택)			
	의 규모를 연면적 500㎡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동법			
	시행령제 7조 제 2항의 취정에 의하여 과금과 같이 공고			
	하고 수수료 지급코자 함이다.			
	가. 공고안 별첨			
	나. 수수료 지급			
	1) 과 목			
	주택및 도시계획 도시계획 건축허도.			
	건축지도업무. 수수료.			
	2) 지불금액: 금 14,800원정.			

1172
결재
1976. 11. 22
시장

한양대학교

3) 산출기준

$2만 \times 30행 \times 700칸 \times 1세대 = 42.000$

4) 시공방법

공고후 청구에 의거 적분.

첨부 공고안 / 무 글

"제 2 안"

수신 수신취 참조
제목 등 상

1. 주택전층허가제도 개선시행에 따라 건축법
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의 추징에 의하여 감리자를
징하여야 할 주택의 추모를 동법시행령 제7조2항의
추징에 의하여 벌칙과 같이 공고하오라고 통보함이라
첨부 공고안, 무 글

수신서 서청1~13. 서훈1~3. 여한전층48층회 서훈리 2

서울특별시 1978.12.29 공고 제 128호	공고 안	공고번호	1978.12.29	제 128호
	심사자	자연계	심사부	심사부

감리자를 정하여야 할 주택규모공고

주택진흥촉진기금도 개선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를 정하여야 할 주택 규모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이다

1976. 11. 23.

서울특별시 강

가 음

1. 주택의 규모
주택(단독주택, 병용주택, 연립주택)의 영면적
50 M² 이상

2. 시행시기

76. 12. 1 끝